

제 4369 호



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

1. 성 명 : 이 학 기
2. 전 문 과 목 : 통합치 의학과전문의
3. 생 년 월 일 : 1988년 8월 14일 (성별 : 남)
4. 근 거 : 『의료법』 제77조

『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』
제1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
와 같이 자격을 인정합니다.

2020년 12월 14일

보건복지부장관





제 28323 호

치과의사 면허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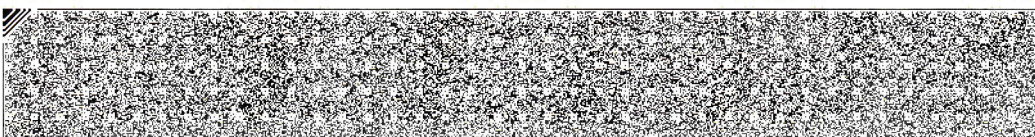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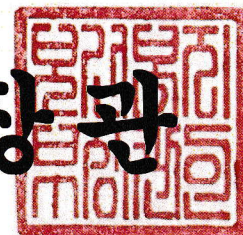


1. 성 명 : 이 학 기
2. 생 년 월 일 : 1988년 8월 14일
3. 근 거 : 「의료법」 제5조

『의료법 시행령』 제8조에 따라 위와
같이 면허합니다.

2013년 3월 8일

보건복지부장관





제 571 호

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

1. 성 명 : 이 학 기
2. 전 문 과 목 : 구강악안면외과전문의
3. 생 년 월 일 : 1988년 8월 14일 (성별: 남)
4. 근 거 : 『의료법』 제77조

『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』
제1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
같이 자격을 인정합니다.

2017년 3월 2일

보건복지부장관

